

당첨자 계약 안내문

■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

구분	기간	장소
당첨자 계약	2022.04.21(목) ~ 04.22(금) 2일간 (10:00 ~ 16:00) (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오전 10:00부터 예약 가능)	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홍보관 (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3)

- 문의 : 1533-7773
- 코로나 19로 인해 계약체결을 위한 방문예약제를 진행합니다.
- 방문예약 신청방법은 <http://mapo.villiv.co.kr> 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방문일정 변동시 홈페이지에서 예약내역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대금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 납부계획

구분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
계약금	국민은행	268801-04-242324	케이비부동산신탁(주)	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요망
중도금/잔금				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31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■ 계약 시 구비사항

본인 계약 체결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•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(본인 발급용 / 용도 : 소청주택 계약용)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 및 주민등록등본 1통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) -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) •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- 세액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만원 / 세액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- 오프라인 : 우체국 · 은행(해당 기간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) 온라인 :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
법인 계약 체결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• 사업등록증 사본 1통, 법인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소청주택 계약용)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, 법인인감(사용인감 사용자 사용인감계 1통) •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(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)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1통(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) *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, 대리인도장,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 * 외국법인인 경우 : 관원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•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 - 세액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15만원 / 세액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: 오프라인 - 우체국 · 은행(해당 기간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) 온라인 -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
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(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 포함)간주하며,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-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(용도 : 소청주택 계약 위임용) -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(분양홍보관 내 비치) - 대리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및 도장

*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3.31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
■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

- 대출 관련(대출기간 포함) 세부 일정 및 납부시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
- 대출금액 :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40%범위 내(중도금 1~4회차)에서 중도금을 융자(앞선분양대금 9억 미만 세대 해당됨)을 시행할 예정이고 총 분양대금의 20%는 현금 지급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무이자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. (단,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대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)
- 외국인 및 법인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불가시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계약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입주자정밀이 담당되거나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, 입주자정밀간 발생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중도금 대출기간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선정은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, 계약자는 부동산정책의 변경 및 대출기간의 규정,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계약자는 정책의 변경 및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간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앞선이 제한(분양대금 9억원 초과 세대 해당됨)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.
-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협약 조건에 의한 주택형별 계약금 10%납입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.
-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인지도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,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또는 대출금 감액시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족금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중도금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(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)은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1건으로 제한되고,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,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주체의 부도 ·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융자(앞선)한 중도금 무이자조건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이자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중도금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, "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" 또는 "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"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.(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담보대출로 전환한 이후에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 하여야 함)
- 분양사무소 및 분양홍보관은 대출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,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.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상담(전화상담 포함)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대한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- 대출 계약자, 법인,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직적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사업주체가 앞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(준공 후 미납수 등)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, 인지세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,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,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.
-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.

■ 자금조달계획서 안내

2020.12.27. 개정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)내 주택 거래신고 시 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이하 "자금조달계획서")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중병자로 제출 의무입니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(최초 공공계약 및 분양권, 입주권 전매를 포함)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정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「부동산거래신고」를 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,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·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